■ 산림보호법 시행령 [별표 3의2] <개정 2024. 5. 31.>

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(제32조의6제4항 관련)

구분	발령기준	조치기준
관심	ㅇ산사태 빈발시기,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기간 등 산사태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ㅇ지진 규모 4.0 ~ 4.4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	ㅇ재난관리자원 정비 ㅇ비상연락망정비 및 대피장소 점검·정비
주의	ㅇ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져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15% 이상의 시·군·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4.5 ~ 4.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	ㅇ입산통제 ㅇ산사태취약지역 순찰 강화 ㅇ재난자막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ㅇ주민대피 명령
경계	ㅇ중·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가 30% 이상의 시·군·구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15% 이상의 시·군·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5.0 ~ 5.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	
심각	ㅇ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또는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ㅇ산사태경보 예측정보가 30% 이상의 시·군·구에서 발생한 경우 ㅇ지진 규모 6.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	ㅇ주의 및 경계 단계의 조치 ㅇ피해대책 마련

<비고>

1. 산림청장은 산사태 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하고,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했을 때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2. 산사태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시·도 단위로 발령한다.
3. 삭제 <2024. 5. 31.>